

# 수의사법 개정안내

우리회는 회원과의 대화 및 총회 등을 통해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 요구, 동원수의사에 대한 적정 비용 지급 등이 제기 됨에 따라,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. 이에 이용희 의원의 협조를 통해 2011년 1월 28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9일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법률안은 7월 15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7월중 공포 · 시행될 예정이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

**붙임 :**

1. 제안이유
2. 제안내용
3.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4. 신구대조표

## 붙임 1

### 제안이유

최근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 이러한 논의 중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.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대한수의사회에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,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붙임 2

### 내안의 주요내용

- 가.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,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14조 신설,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개정).

- 나.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,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(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).
- 다.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30조제1항 후단 신설).
- 라.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·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.
- 마. 제17조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“특별자치시장”과 제25조에 “특별자치시”를 추가함(안 제17조제3항, 제22조제2항 및 제25조).

### 불임 3

##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신고)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(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3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제4장 “수의사회”를 “대한수의사회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.”를 “대한수의사회(이하 “수의사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.

제25조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”를 “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

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”로 한다.  
제37조제3항 중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”을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  
제4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#### - 부 칙 -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,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7조제3항, 제22조제2항,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수의사회로 본다. 수

## 붙임 4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현 행

&lt;신설&gt;

## 제17조(개설) ①~② (생략)

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## ④ (생략)

## 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 ① (생략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## 제4장 수의사회

제23조(설립)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·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## ② (생략)

&lt;신설&gt;

제25조(지부)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(支部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,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## ②·③ (생략)

제31조(보고 및 업무 감독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3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·② (생략)

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제41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1.~2. (생략)

&lt;신설&gt;

## 3.~9. (생략)

## 개정안

제14조(신고)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(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(개설) 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\_\_\_\_\_

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 \_\_\_\_\_

## ④ (현행과 같음)

## 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\_\_\_\_\_

## 제4장 대한수의사회

## 제23조(설립) ① \_\_\_\_\_

대한수의사회(이하 "수의사회"라 한다)를 설립하여야 한다.

##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 회원이 된다.

제25조(지부) \_\_\_\_\_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군 \_\_\_\_\_

## 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\_\_\_\_\_

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#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보고 및 업무 감독) ① \_\_\_\_\_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\_\_\_\_\_

## 제3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##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 \_\_\_\_\_

## 제41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\_\_\_\_\_

## 1.~2. (현행과 같음)

2.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## 3.~9. (현행과 같음)